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57 호 2026. 4. 16.(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69호[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0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1호[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2호[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1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3호[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1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4호[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5호[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7호[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3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8호[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9호[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0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2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3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8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3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6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83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23)]..... 6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84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24)]..... 6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8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6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16호[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공고]..... 6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17호[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4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6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26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1구간))사업 공사완료 공고]..... 6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31호[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7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36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반송문 공시송달공고] 7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45호[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7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53호[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9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62호[공시송달공고]..... 95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의

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
3.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접근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5.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6.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8.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 또는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0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제4조)
- 라.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제5조 ~ 제6조)
- 마. 사무의 위탁 및 구민 참여 활성화(제7조 ~ 제8조)
- 바.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제9조 ~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계어린이풋살구장의 소재지란 중 “호계동 265-5”를 “호계동 265-8”로
한다.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이용료(1회)			이용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영	3,500	2,500	2,500	45,000	40,000	35,000	일 3시간
배드민턴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평일)
테니스	3,000	2,500	2,500	25,000	20,000	20,000	일 3시간, 조명비 포함
헬스	-			45,000	40,000	40,000	
스쿼시	5,000	5,000	5,000	55,000	50,000	50,000	일 1시간
탁구	3,000	3,000	3,000	45,000	35,000	35,000	일 1시간

구 분		수강료(월)			비고
		성인	청소년	노인, 어린이	
수영	평일 (주4회)	55,000	50,000	45,000	아쿠아로빅 포함
	토,일 (주2회)	50,000	45,000	40,000	
배드민턴	평일 (주3회)	140,000	130,000	13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00,000	90,000	90,000	
테니스	평일 (주3회)	150,000	140,000	140,000	개인레슨
	평일 (주2회)	110,000	100,000	100,000	
스쿼시	평일 (주4회)	75,000	70,000	70,000	단체레슨
탁구	평일 (주2회)	50,000	40,000	40,000	단체레슨
생활체조	평일 (주3회)	30,000	25,000	25,000	단체레슨
	평일 (주2회)	25,000	20,000	20,000	

※ 그 밖의 사항

- 1)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2) 월회원과 수강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3) 개인사물함 1개월 대여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용료의 감면율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3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100분의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100분의 5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100분의 10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100분의 5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종목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의 소재지를 실제에 맞게 정정(별표 1)
- 나. 체육시설의 이용료 종목 추가(별표 4)
 - ‘테니스’ 종목의 1회·월 이용료 추가
- 다. 체육시설 이용료·수강료 감면대상 추가(별표 5)
 - 관련법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100분의 5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1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팸투어”란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 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관광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스탬프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 완주자에 대한 지역특산품 또는 기념품 제공
 - 2. 관광 설명회, 홍보관, 박람회 등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

에 대한 기념품 제공

- 3. 구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 4.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및 행사 운영 경비 지원
- 5.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에 대한 기념품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관광자원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구체화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팸투어 정의 신설(제2조제5호)
- 나. 관광자원 홍보 사업 지원대상 범위 정비(제5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 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
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5.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가족돌봄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라. 지원사업(제5조)
- 마.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제7조)
- 사. 중복지원의 제한(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3.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선배시민으로 인식하고,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 라. 지원사업 등(제5조)
- 마. 사업의 위탁(제6조)
- 바. 홍보(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4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다과, 체험활동을 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를 “법 제38조와 법 시행령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도입·시행하여야”를 “도입·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각각 “마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마련하여야”를 각각 “마련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확립하여야”를 “확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취하여야”를 각각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양성평등정책 활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 신설(제10조)
- 나.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방법 변경(제12조제3항)
- 다.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횟수 변경(제26조제2항)
- 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정비(제12조제1항, 제2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5호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교육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 7.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 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체험활동 결과물, 다과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지원과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범위 구체화(제3조)
- 나. 홍보물품, 다과, 기념품 등 지원 근거 신설(제6조제3항 및 제4항)
- 다. 혁신교육사업 등 교육활성화 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제15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6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홍보
2.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등 간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제3조)
- 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규정(제4조)
- 라.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규정(제5조)
- 마. 기타(제6조 ~ 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7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
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
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점검·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을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과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나. 유용미생물 보급에 관한 사항(제3조 ~ 제6조)
- 다. 보급제한에 관한 사항(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8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

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부경찰서장

나. 북부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구민대표 또는 구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

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

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책무 등(제1조 ~ 제3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제4조)
- 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제5조 ~ 제15조)
-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제16조)
-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등(제17조 ~ 제18조)
- 바.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제19조 ~ 제2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9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

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제1조 ~ 제3조)
-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제4조 ~ 제5조)
-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제6조 ~ 제1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148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3. 겸직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4조제2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4.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p>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p>공개사과</p>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금지 등에 관한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

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별표 3)
- 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 상향 조정(별표 4)
- 다.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별표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14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을 “별
표”로 한다.

제3조 중 “영”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를 “「울산광역시 북
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
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
며,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 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 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 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 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 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 급 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시 출장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기준 명시

(제2조제2항 개정 및 별표 신설)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정비 : 중복 조항 삭제

(제5조제3항 삭제)

다. 상위법령 준용 조항 등 불일치 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148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 임기와 일치시키고,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등록 중복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임위원의 임기 정비(제5조제1항)
- 나. 상임위원장 선거 시 상임위원장 간 후보자 중복 등록 제한 명확화 (제6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
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148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위촉 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5. 12. 4)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법·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신설(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5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소1-137호선)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53-8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등 급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137	10~16	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대표이사 전수근
 - 나.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 6길 21, 906호(우정동 우정혁신타워)
5. 사업기간: 인가일 ~ 2026. 6. 30.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참조
7.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북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달천동	153-8	대	8.0	8.0	류○관	울주군 농소면 달천리 000				
2	달천동	153-9	대	1.0	1.0	류○관	울주군 농소면 달천리 000				
3	달천동	159-7	임	18.0	18.0	문○이	울산시 동동 000				
4	달천동	227-4	도	15.2	15.2	울산광역시 북구					
5	달천동	153-7	대	13.0	13.0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 6길 21, 906호 (우정동 우정혁신타워)				
6	달천동	159-6	임	16.0	16.0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 6길 21, 906호 (우정동 우정혁신타워)				
7	달천동	214-6	임	15.6	15.6	울산광역시 북구					
8	달천동	214-10	임	61.1	61.1	울산광역시 북구					
9	달천동	892-16 ₃	천	106.0	106.0	국 (국토교통부)					
10	달천동	892-16 ₅	천	897.0	897.0	국 (국토교통부)					
11	달천동	892-16 ₈	천	66.0	66.0	국 (국토교통부)					
12	달천동	892-16 ₉	천	3.0	3.0	국 (국토교통부)					
13	달천동	892-14 ₈	천	8.0	8.0	울산광역시 북구					
합 계				1,227.9	1,227.9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83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김인*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구교로 17*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6. 5. 3.(일) 12:00 ~ 17: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8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이근*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아진로 42 쌍용아진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6. 4. 27.(월) 14:00 ~ 17: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8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신천동 812-4	매산5로 10	2026. 4. 15.	2026. 4. 16.	2017. 5. 4.	매산로에서 분기된 도로로 연계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산하동 1031-16	산음12길 43	2026. 4. 15.	2026. 4. 16.	2014. 4. 21.	산음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157-3	송정5길 5	2026. 4. 15.	2026. 4. 16.	2018. 5. 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161-4	송정10길 30	2026. 4. 15.	2026. 4. 16.	2018. 5. 10.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16 호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68번지 일원 「(주)서연이화 공장부지 조성 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주)서연이화 공장부지 조성 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2. 시 행 자 : (주)서연이화 대표이사 강용석
3. 폐쇄한 지적공부 및 새로운 지적공부 내역 : [붙임]참조
4. 지적공부시행일 : 2026. 4. 9.
5. 공고기간 : 2026. 4. 9. ~ 4. 23.
6. 기타사항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41-7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사업(㈜서연이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쇄 지적공부 및 새로운 지적공부 [사업시행자 : ㈜서연이화 대표이사 강용석]							
폐쇄 지적공부				새로운 지적공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연암동	525-8	임야	138	연암동	1458	공장용지	12961.1
	564-4	전	1				
	567-2	전	13				
	568	전	5186				
	569-2	묘지	281				
	569-3	전	207				
	569-5	묘지	215				
	569-6	전	509				
	573-1	전	206				
	574	전	874				
	576-1	전	1564				
	576-2	전	991				
	576-3	전	331				
	578	답	1096				
	579-1	대	265				
	614-1	전	203				
	616	전	141				
	617	답	421				
	617-8	답	259				
	연암동	564-6	전				
566-2		도로	57				
567-5		전	24				
567-3		전	312				
568-2		전	71				
568-1		도로	62				
569-10		전	80				
569-12		전	11				
569-13		전	33				
578-5		답	109				
578-4		도로	396				
연암동	525-13	임야	117	연암동	1460	도로	1180.9
	569-17	전	41				
	569-18	전	606				
	573-5	전	153				
	574-5	전	272				
연암동	525-14	임야	10	연암동	1461	도로	296
	567-4	전	1				
	569-15	전	22				
	569-16	전	140				
	573-6	전	43				
	574-7	전	80				
연암동	525-15	임야	150	연암동	1462	도로	731.9
	574-6	전	6				
	617-70	답	446				
	617-71	답	124				
계	45	16277	계	5	16316.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0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30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사업
 - 나. 명 칭 :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8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2020. 6. 18. ~ 2027. 6. 16.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8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 지 조 서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도로개설공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 군	면	리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11-24	대	1	1		울산광역시 북구	
2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45	잡	14	14		울산광역시 북구	
3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11-25	대	15	15		울산광역시 북구	
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11-14	과	70	70		울산광역시 북구	
5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300	대	142	142		울산광역시 북구	
6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66	대	30	30		울산광역시 북구	
7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236	대	18	18		울산광역시 북구	
합 계						290	29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5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0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96호선(1구간))사업
 - 나. 명 칭 :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도로개설공사(1구간)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79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2019. 3. 28. ~ 2026. 3. 28.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8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변경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북구 신천동	745-277	도	156	156		울산광역시 북구				
2	북구 신천동	745-229	도	12	12		울산광역시 북구				
3	북구 신천동	745-226	도	78	78		울산광역시 북구				
4	북구 신천동	311-22	과	62	62		울산광역시 북구				
5	북구 신천동	311-15	도	69	69		울산광역시 북구				
6	북구 신천동	311-23	과	205	205		울산광역시 북구				
7	북구 신천동	312-13	전	27	27		울산광역시 북구				
8	북구 신천동	311-21	대	1	1		울산광역시 북구				
9	북구 신천동	312-12	전	3	3		울산광역시 북구				
10	북구 신천동	311-17	과	111	111		울산광역시 북구				
11	북구 신천동	311-19	대	83	83		울산광역시 북구				
12	북구 신천동	310-2	전	25	25		울산광역시 북구				
13	북구 신천동	749-8	도	20	20		울산광역시 북구				
14	북구 신천동	309-12	대	7	7		울산광역시 북구				
15	북구 신천동	309-13	답	176	176		울산광역시 북구				
16	북구 신천동	773-7	구	22	22		울산광역시 북구				
17	북구 신천동	308-9	도	38	38		울산광역시 북구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변경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8	북구 신천동	307-12	대	8	8		울산광역시 북구				
19	북구 신천동	307-13	답	278	278		울산광역시 북구				
20	북구 신천동	304-3	전	153	153		울산광역시 북구				
합 계				1,534	1,534						
					20필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당초 편입 면적 (m ²)	변경 편입 면적 (m ²)
1	북구 신천동	745-224	도	252	161	156
2	북구 신천동	745-229	도	12	12	12
3	북구 신천동	745-226	도	78	78	78
4	북구 신천동	311-14	과	132	63	62
5	북구 신천동	311-15	도	69	69	69
6	북구 신천동	311-16	과	241	208	205
7	북구 신천동	312-13	전	28	27	27
8	북구 신천동	311-21	대	1	1	1
9	북구 신천동	312-12	전	3	3	3
10	북구 신천동	311-17	과	111	111	111
11	북구 신천동	311-19	대	83	83	83
12	북구 신천동	310-2	전	25	25	25
13	북구 신천동	749-8	도	20	20	20
14	북구 신천동	309-12	대	7	7	7
15	북구 신천동	309-13	답	176	176	176
16	북구 신천동	773-7	구	22	22	22
17	북구 신천동	308-9	도	38	38	38
18	북구 신천동	307-12	대	8	8	8
19	북구 신천동	307-13	답	278	278	278
20	북구 신천동	304-3	전	153	153	153

과 378
 구 22
 답 454
 대 99
 도 373
 전 2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3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10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6. 4. 16.(목) ~ 2026. 4. 27.(월) 18:00까지
3.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052-241-7873)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 이메일 : jnr8657@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자격요건
 -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8. 활동내용
 -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교통소통 등)을 심의·조정
 -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9. 선정결과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52-241-78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6. 4.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29. (15일)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연번	위반건축물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81번지	유**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통지	299,000원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위 공고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45호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점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4. 16. ~ 5. 1.(14일 이상)
4. 공고대상

연번	소재지	지목	현황 면적(m ²)	점유(추정) 면적(m ²)	행위(점유)자		위반 사항
					성명	주소	
1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산 152-1	도로	3,380	280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44	답	857	30	미상	미상	무단점유 (창고)
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4	대	1,781	513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500,창고13)
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5	대	411.7	50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5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6	대	491.1	80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6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8	대	435.6	5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7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1029-9	대	346.7	75	미상	미상	무단점유 (경작)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6. 송달내용

가.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 명령 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 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052-241-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당사동 산152-1)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당사동 산152-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당사동 산152-1) - 경작(28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달천동 892-44)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달천동 892-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달천동 892-44) - 무단점유(창고 3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산하동 1029-4)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산하동 1029-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산하동 1029-4) - 경작(500㎡), 창고 (1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산하동 1029-5)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산하동 1029-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산하동 1029-5) - 경작(5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산하동 1029-6)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산하동 1029-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산하동 1029-6) - 경작(8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산하동 1029-8)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산하동 1029-8)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산하동 1029-8) - 경작(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울산광역시 복구

수신자 미상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처분 사전통지(산하동 1029-9))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산하동 1029-9)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산하동 1029-9) - 경작(7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복구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	정유진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회계과			전화번호	052-241-7312
		전자우편 주소	jej02063@korea.kr			팩스번호	052-241-8689
	제출기한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당사동 산152-1)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달천동 892-44)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산하동 1029-4)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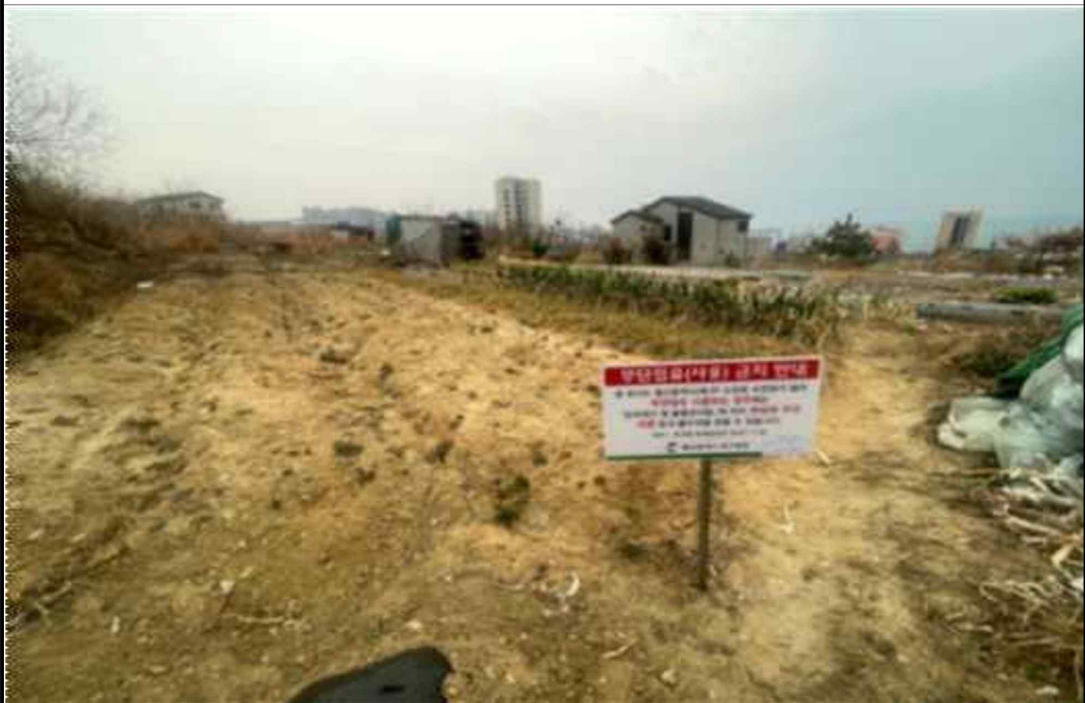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산하동 10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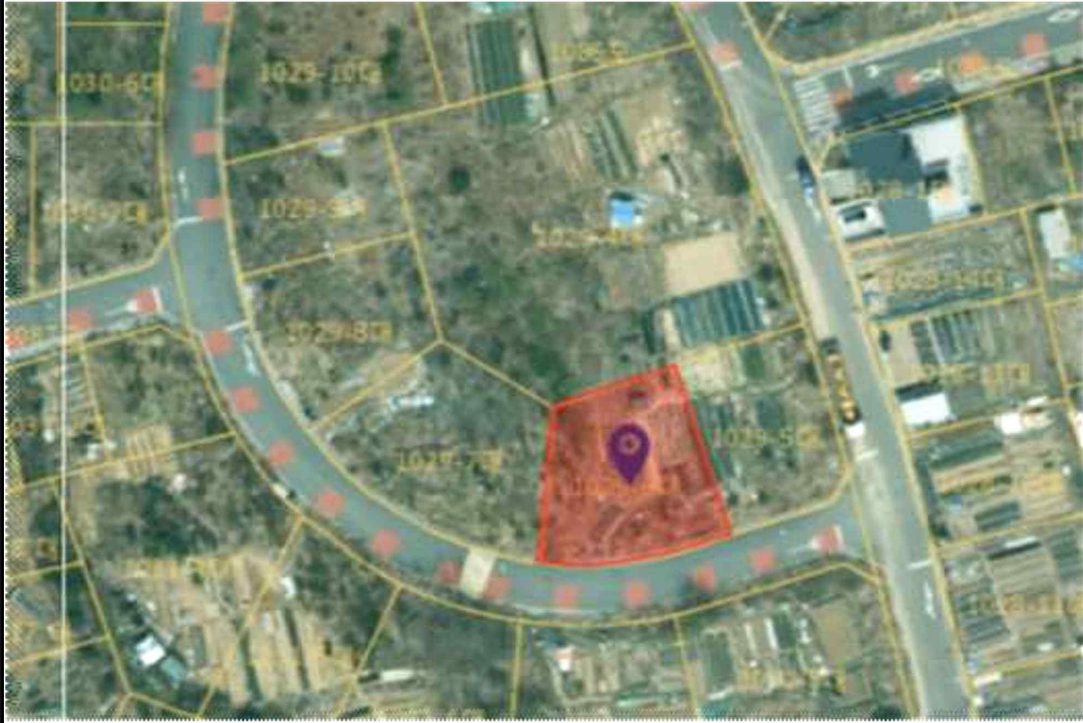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산하동 1029-6)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위치도(산하동 1029-8, 1029-9)



공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53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업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6. 4. 15. ~ 5. 5.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설치예정장소	수 량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성혜1길 2-1, 염포동417-4, 창평동1232-3)	이동식 3대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5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송달서류 : 지방세(취득세) 납세고지서
- 공고기간 : 2026. 4. 16. ~ 4. 30. (14일간)
- 대 상 자

납세자명	주 소	세 목	과세물건
농업회사법인 더*팜*경(유)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길 1* (달천동)	취득세 (부동산)	달천동 7*-*번지 외 5건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로 2**-*0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세무1과 과표팀(☎ 052-241-7542)

2026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